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1. 25. 백승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 11.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2. 2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26.)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10.)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백승아의원)

최근 AI·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석·박사급 고급 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이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현재 사내대학원 운영 근거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두고 있는 한시 규정으로 제도 운영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사내대학원 설치 기업과 동종·유관 업종 재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어렵고, 융복합 인재 수요가 커지는 환경에서 사내대학원을 설치한 기업이 동종·유관 업종이 아닌 다양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학 대상을 확대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재직자뿐 아니라 채용후보자와 동종·유관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입학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산업을 융합·활용하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최선영)

개정안은 ①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내대학·대학원 등의 ② 채용후보자와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까지 입학자격을 확대하고 있음.

① 개정안에 따라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가 신설되는 경우,

기술환경과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재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첨단 산업 기업 맞춤형 석·박사급 인력 양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행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이미 사내대학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적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있음.

② 또한 개정안은 사내대학·사내대학원의 입학자격에 채용후보자를 포함하여, 채용후보자는 사내대학원뿐만 아니라 사내대학 입학자격도 얻게 되는데, 현행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입학자격을 종업원뿐만 아니라 채용후보자로 확대하고 있고, 채용후보자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 체득할 수 있는 지식을 선제적으로 교육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③ 아울러 개정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까지 입학자격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융·복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재양성의 범위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고, 「평생교육법」상 사내대학은 종업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사내대학·사내대학원을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도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평생교육법」에서 입학대상을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거나 협력 관계에 있는 종업원까지 확대한 취지가 주로 사내대학이 사업장 규

모가 큰 대기업에 설치되고 하도급이나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들은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생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고민정)

백승아 의원, 김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